

여말 선초 농서 제작과 집권층의 지적 권위 수립

정저싱(鄭澤星)[†]

1. 머리말

한국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은 국가의 재정이나 요역(徭役) 체제에서 물적, 인적 기반을 제공하고, 중농(重農)이라는 이념 하에 사회적 안정, 정권의 유지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역대의 위정자들은 농업 생산에 깊은 관심을 두고 농정(農政)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농서(農書)의 편찬과 보급을 통한 농법의 지도와 권농의 실행이 농정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고려 시대부터 중국과의 서적 교류를 통해 중국 농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¹ 선종 8년(1091)에 송 황제가 고려에 소장된 서적 선본(善本)을 구하는 목록 중에 『왕방원정초목소(王方慶園亭草木疏)』, 『채옹월령장구(蔡邕月令章句)』, 『범승지서(汜勝之書)』 등 중국 농서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농서들은 그 전부터 고려에서 이용되었을 것이다.² 또 임경화(林景和, 1103~1159)의 묘지명에 따르면 인종 5년(1127)에 그는 전래된 『손씨잠경(孫氏蠶經)』을 방언으로 해석하고 조정의 뜻에 따라 널리 반포하였다.³ 아울러 1273년에 원나라 농정 일반을 총괄하는 대사농사(大司農司)에서 편찬된 『농상집요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4.46.3.447>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pino00814@gmail.com

¹ 고려 시대 중국 농서 수용의 기본 상황에 대해서는 한정수, 『한국 중세 유교정치사상과 농업』(해안, 2007), 113-185 참조.

² 『고려사』 권10, 세기10, 선종 8년 6월 18일 병오.

³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제4판)』(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178.

《農桑輯要》』는 이암(李穡, 1297~1364)이 1349년에 원에서 돌아왔을 때 고려로 입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372년 강시(姜蓍, 1339~1400)에 의해 경상도 함주(陝州)에서 판각, 간행되었다.⁴ 조선 건국 이후 태종대에는 『농상집요』를 향언(鄕言)으로 번역해 간행하였고, 세종대에는 조선 풍토에 알맞은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해 보급하였다. 이렇게 여말 선초에 사대부 관료와 국왕을 비롯한 집권층은 농업 생산의 증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농서의 제작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존 연구에서 집권층의 이러한 모습은 여말 선초라는 특수한 역사 시기와 관련지어 이해되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농업 생산의 어떠한 기술 조건이나 발전 수준이 농서의 제작과 보급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문제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15세기 전후를 한국 농업사의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예컨대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휴한농법(休閑農法)에서 연작상경(連作常耕) 농법으로의 전환, 그리고 직파법(直播法)에서 이앙법(移秧法)으로의 전환, 수도작(水稻作)의 확대, 수리(水利) 시설과 농우(農牛) 사용의 보급, 조선의 독자적 농서의 출현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⁵

4 이암은 1328년부터 1330년까지, 그리고 1349년 2월과 9월, 총 세 차례 원에 다녀왔지만, 고려에서 간행된 『농상집요』가 1336년에 제작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볼 때 1349년이 『농상집요』의 입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암이 1349년 2월에 忠定王을 모시고 원에 다녀왔을 때 이 책을 가져왔다는 견해와, 그가 1349년 9월에 王位繼承賀禮使로 원에 갔을 때 이 책을 입수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주, “李穡의 생애와 정치활동”, 한영우 외,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 (일지사, 2002), 98-103; 염정섭, “杏村 李穡의 《農桑輯要》 도입과 의의”, 한영우 외, 같은 책, 204-206 참조.

5 이춘녕, 『이조농업기술사』 (한국연구원, 1964); 宮嶋博史, “朝鮮農業史上における十五世紀”, 『朝鮮史叢』 第3號 (神戸: 靑丘文庫, 1980); 김영진, “조선조 초기 한국농학의 성립과정 - 고농서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6:3 (1983), 65-76; 김영진, “조선조 초기 한국농학의 성립과정 - 고농서를 중심으로(II)”, 『농촌경제』 7:3 (1984), 81-89; 김용섭, “『농사직설』의 편찬과 기술”, 『애산학보』 4 (1986), 185-240; 이호철, 『조선전기 농업경제사』 (한길사, 1986); 김용섭, “『농서집요』의 농업 기술”, 『세종학연구』 2 (1987), 3-21; 김용섭, “『농사직설』과 『사시찬요』의 목면경종법 증보”, 『동방학지』 57 (1988), 95-102; 이호철, “『농서집요』의 농법과 그 역사적 성격”, 『경제사학』 14 (1990), 1-41; 이근수, “『농사직설』 단계에서의 수전농업”, 『한국의 농경문화』 3 (경기대학교 박물관, 1991), 167-185; 김상태, “『농사직설』과 15세기 수전농업의 실태”, 『인하사학』 7 (1999), 43-84; 서정상, “『농사직설』의 농법과 노동”, 『태동고전연구』 16 (1999), 43-84; 오인택, “『농서집요』를 통해서 본 조선 초기의 경종법”, 『지역과 역사』 5 (1999), 87-118; 김상태, “『농사직설』과 조선 초기의 농업실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염정섭, “조선시대 농서 편찬과 농법의 발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이호철, “조선전기 농법의 전통과 변화”, 『농업사연구』

아울러 이 농서들의 편찬 배경과 경위에 대해 여말 선조의 사회 변동, 국가 운영 등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도 있다. 예컨대 여말 선조의 농서 제작은 당시 농업경영 주체의 성장과 계층적 변동에 따라 필요해졌거나, 주자학을 수용한 신흥 사대부들의 농업에 관한 인식 변화⁶ 등이 반영되어 있다거나, 북방 개척⁷, 공법(貢法) 제정⁸, 수령(守令)의 권농 실행 강화⁹ 등 신왕조의 과제들과 맞물려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왕조의 과제를 염두에 둘 경우 구만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말 선조 과학기술의 역사적·사회적 변천 과정을 “집권체제(集權體制)의 재편(再編)” 즉 “토지와 인민에 대한 일원적·직접적인 지배 질서의 확립과 안정화”라는 일반사의 발전 과정과 관련지어 구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¹⁰ 다시 말해 여말 선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지배 질서의 구축을 도모하는 집권층의 의제를 통해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의 경우, 농서 제작 사업에 담겨 있는 의제의 대부분은 농정 추진에 대한 것들이다. 집권층이 농법을 전수하고 농업 경영을 지도하는 지침서로 또는 중앙 권농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고 지방 수령의 권농 실행을 도와주는 권농교서의 부산물로 농서를 제작해 반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해는 일반화된 서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농업 기술 보급과 권농 정책 실시를 위한 농서 제작의 의미는 백성 생활의 안정화, 재생산 기반의 보장 등 보편적인 목표의 실현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유교적 이념의 구현, 중화 보편의 추구 그리고 자기 인식의 부각 등 거대담론 속에서도 농서 제작의 의미는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¹¹ 따라서 지배 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농서 제작 사업을 전개한 집권층의 의

3:1 (2004), 25-48; 염정섭, “14세기 고려말, 조선초 농업기술 발달의 추이 - 수도 경작법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6:1 (2007), 97-127 등.

6 이태진, 『한국사회사 연구: 농업기술 발달과 사회변동』 (지식산업사, 1986); 이종봉, “고려각본 『원조정본농상집요』의 한국농학사상에서의 위치”, 『부산사학』 21 (1991), 1-38; 위은숙, “『원조정본농상집요』의 농업관과 간행주체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8 (2000), 117-149; 김인호, “고려시대 관료의 농업관과 농민의식”, 『역사와 실학』 74 (2021), 103-135 등.

7 이경식, “조선초기의 북방개척과 농업개발”, 『역사교육』 52 (1992), 1-49 등.

8 서정상, 앞 논문, 47-55; 김상태, “『농사직설』의 편찬과 보급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 36 (2010), 3-35 등.

9 염정섭, “세종대 권농 실시와 농법 정리의 의의”, 『규장각』 58 (2021), 1-33 등.

10 구만옥, “조선왕조의 집권체제와 과학기술정책: 조선전기 천문역산학의 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4 (2004), 219-221.

11 이기복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중심-주변”의 대립 구도와 확산모형

제와 그 실현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권력 관계의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셸 푸코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배 권력이 항상 지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개입하고 지식은 역으로 권력의 지배를 뒷받침하며, 권력은 지식 자체를 통해 지배한다기보다는 지식의 생산 방식이나 그 의미를 규정하는 행위를 통해 지배를 이루는 것이다.¹² 이 주장은 여말 선초 농서 제작과 지배 질서 구축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집권층이 농정 목표의 실현, 나아가 지배 질서의 구축을 위해 농서를 제작·보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의 협력자인 관료와 주력인 농민들이 반드시 이 농서를 이용해야 했을까? 집권층은 지식 생산자로서 지식 수용자에게 인정을 얻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집권층은 무력적·행정적인 강제수단으로 농서의 활용을 강요할 수도 있지만, 농서의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지식 생산자와 교화 주체로서의 자격, 생산된 지식의 진실성과 유용성 등 집권층의 지적 권위를 높임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지식 수용자의 지지와 인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농서 제작의 과정은 집권층 지적 권위의 수립 과정이며, 지적 권위의 시사를 통한 농서의 보급과 활용은 최종적으로 지배의 정당화와 지배 질서의 구축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아울러 농서를 제작·간행하는 과정에는 집권층이 자신의 지적 권위를 수립할 의도와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이 항상 개입되는데, 그러한 의도와 전략은 다른 시기, 주제, 대상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역사 시기와 사회 구조 하에 나타난 시대 배경과 집권층 행위자의 처지 및 과제 등을 고려해 농서 제작의 과정과 의미를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서의 서문을 정치 사상을 담은 텍스트로 보고 거기에 쓰인 문구들이 각각의 맥락에서 어떻게 국가 프로젝

을 전제로 하고 여말 선초 정치적으로 민감한 천문학이나 예악의 발전에 대해 타자로서의 중국과 거리를 두기 위한 독자성을 보인 과정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중화로서 중국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했던 사대부의 중화주의적 사유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고, 나아가 그러한 발전 양상과 방식을 농학, 의약학, 병학, 산학 등 여타 분야로 확대해서 일반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성찰 하에 이기복의 향약·동의 담론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심-주변” 관계를 역사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역사 행위자들의 “행위성” 즉 “사업을 기획한 의도”, “자아를 구성하는 전략”으로 나눠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복, “고려·조선의 ‘향약’ 및 ‘동의’ 담론의 문화적 의미: 행위자의 의제 및 자아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93 (2021), 412-418 참조.

¹² 이에 대해서는 Michael Foucault, Colin Gordon, 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참조.

트로 이루어진 농서 보급을 정당화하는 수사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이현욱의 연구에서 그러한 접근의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¹³ 다만 관련 시도는 아직 불충분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말 선초 집권층에 의해 제작·간행된 농서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려 말의 『원조정본농상집요(元朝正本農桑輯要)』, 조선 초 태종대의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 세종대의 『농사직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 농서들의 제작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여말 선초 농업 지식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반영된 집권층의 지적 권위 수립 방식에 대해 검토해 보고, 나아가 이를 통해 여말 선초의 왕조교체 및 과학기술 발전, 문물제도 정비라는 맥락에서 집권층의 지배 질서 구축에 대한 농서 제작의 의미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2. 고려 말 『농상집요』의 간행: 사대부 사명의 표방과 전달

원나라 대사농사가 편찬한 『농상집요』는 14세기 중반에 고려로 전래되었고 1372년에 판각되어 『원조정본농상집요』라는 이름으로 합주에서 간행되었다.¹⁴ 『농상집요』의 간행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은 농서의 판각과 간행을 주로 담당할 합주 지사(陝州知事)였던 강시(姜蓍)와 경상도 안렴사였던 김주(金湊, 1339~1404), 후서(後序)를 쓴 이색(李穡, 1328~1396)과 서후(書後)를 쓴 진주 목사 겸 권농사(勸農使)였던 설장수(偁長壽, 1341~1399), 그리고 본문 한자의 음의(音義)를 달아준 승려 목암(木菴) 찬영(璨英, 1328~1390) 등이다. 이같은 간행 주체의 성격에 대해 이종봉은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향촌 사회에서 권농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 수령들의 자의식과 독자적·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데 비해,¹⁵ 위은숙은 이 사람들을 당시 신법파의 정도전(鄭道傳, 1342~1398) 계열과 대립했던 구법파의 이색 계열로 묶고 이 농서의 간행을 이색 계열의 사회개

¹³ 이현욱, “국왕이 주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정당화: 「농상집요후서」와 「농사직설서」의 비교 검토”, 『한국문화』 101 (2023), 141-165.

¹⁴ 고려로 유입된 『농상집요』의 판본 및 내용, 그리고 이 책의 유입, 간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김용섭, “고려각본 『원조정본농상집요』를 통해서 본 『농상집요』의 찬자와 자료”, 『동방학지』

65 (1990), 53-76 참조.

¹⁵ 이종봉, 앞 논문, 8-23.

혁안 구상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어쨌든 그간의 연구는 고려 말 『농상집요』의 지방 간행을 당시 주자학을 수용하는 집권층들의 유교적 이념 구현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여말 선조의 사상적 변화와 정치적 움직임 등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농서 간행 주체들이 고려 말의 지방 치자로서 농서의 간행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지, 또 집권층인 자신들의 어떠한 목표를 이룩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고려 말 개별 사대부 관료가 농서 간행을 통해 자신의 지적 권위를 수립하는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먼저 고려 말 『농상집요』를 간행한 주역인 함주 지사 강시의 관점부터 살펴보자. 이색과 설장수의 서문에는 『농상집요』 간행 사실에 관한 강시의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봉선대부 함주 지사 강시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농상집요』는 행촌 이시중(李侍中)이 그의 외생(外甥) 판사 우확(禹確)에게 전수하고, 나 강시 또한 우확에게서 얻었는데, 무릇 의식과 재화를 풍족하게 하는 방법과, 곡식을 심고 짐승을 기르는 갖가지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각각 부분별로 모아서 자세히 나누어 분석하고 훑볼로 비치듯이 하였으니, 실로 생업을 영위하는 좋은 법이다. 내가 장차 여러 고을에 주고 새겨서 널리 전하게 하려 하는데, 그 글자가 크고 권질이 무거워서 먼 곳에 보내기가 어려울 것을 근심하여, 이미 가는 해서로 써서 등출(騰出)하여 두었고, 안렴 김공(金公) 주(湊)가 또 베 몇 필로 그 비용을 도와주었다.” 하며, 권말에 기록해 주기를 청하였다.¹⁷

함주의 강사군(姜使君) 시가 명을 받아 임지에 부임한 뒤에 일이 있어 진주에

¹⁶ 저자도 이 논문에서 중앙의 정치세력은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분화되고 또 이색의 문생 중 일부는 나중에 정도전 계열과 비슷한 사회개혁안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간행 주체의 정치 입장과 개혁 경향을 일반화하여 1372년 『농상집요』 간행의 의미를 부연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위은숙, 앞 논문, 138-146.

¹⁷ 李穡, “農桑輯要後序”, 『牧隱文藁』 卷9. “奉善大夫知陝州事姜善走書於予曰: ‘農桑輯要, 杏村李侍中授之外甥判事禹確, 善又從禹得之. 凡衣食之所由足, 貨財之所由豐, 種蒔蔘息之所由周備者, 莫不門分類聚, 縷析燭照, 實理生之良法也. 吾將刻諸州理, 以廣其傳. 患其字大帙重, 艱於致遠, 已用小楷謄書, 而按廉金公湊又以布若干相其費矣.’ 請志卷末.” 원문은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제5집)』 (민족문화추진회, 1990), 68-69 참조. 한국어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번역문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이하 같다.

이르자 나에게 말하기를, “『농상집요』 한 책은 실로 백성들의 의식이 큰 근본이다. 이는 국가를 소유한 자가 우선 힘써야 할 바인데 또한 우리 수령에게 오히려 절요한 일이다. 내가 예전에 우연히 이 책의 진본을 얻었는데, 안부(按部) 김공 주에게 상의하여 본주에서 판각하여 널리 전하려 하였다. 거의 만에 하나라도 약간의 힘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자네는 어찌 나를 위하여 장래의 고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기록해 주지 않는가?”¹⁸

위 기록을 통해 보면 강시는 일찍이 이암의 외생인 우확¹⁹에게서 『농상집요』의 진본을 얻은 다음에 이 책의 가치를 실감하여 경상도 안렴사 김주와 더불어 이 책을 합주의 여러 고을에서 판각,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강시의 말을 살펴 보면, 『농상집요』의 입수 내력 및 간행 필요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 외에 수령으로서 지방 사회를 교화하고 백성의 생업을 돌봐야 한다는 자의식 및 실천 의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도 있다. 조정의 지시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농서를 간행했다는 점,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원나라에서 유통되던 해서(楷書) 대자본(大字本)을 해서 소자본(小字本)으로 다시 판각했다는 점, 김주처럼 자신의 재산으로 간행 비용을 보탬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같이 합주에서 볼 때, 『농상집요』의 간행은 지방관들이 스스로 추진하고 열정과 심혈을 많이 쏟은 민생 사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강시의 목적은 농서 간행 자체에만 국한하지 않은 듯하다. 강시가 개인적인 동인으로 농서를 간행하기로 하지만 그는 여러모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첫째는 경상도 안렴사 김주와의 상의(商議)인데, 강시는 경상도 관내 군현의 수령으로서 직제상 도 안렴사인 김주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재가와 지시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²⁰ 하지만 김주도 사비(私費)로 간행 비용을 보탠 것

¹⁸ 俛長壽, “書農桑輯要後”. “陝州姜使君著, 既受命到官, 酒以事至督, 而語余曰: ‘農桑輯要一書, 實生民衣食大本, 而有國家者之先務, 且在吾守令, 猶爲切要事也. 嚮偶得其本, 因謀諸按部金公湊於本州鏤梓, 以廣其傳. 庶期小補於萬一者, 子盍爲我識其事, 以爲將來之考證乎?’” 원문은 이은숙의 2000년 논문의 부록(148-149)에 정자로 실린 바 있고, 필자는 부산대 이종봉 교수의 도움으로 원전 해당 부분의 복사본을 얻어 보고 다시 정리하였다.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하 같다.

¹⁹ 염정섭의 분석에 따르면 우확은 이암의 작은 이모와 우천계(禹天啓) 사이에 둔 아들로 이암의 이종제(姨從弟)였을 것이며 강시는 이암의 생질녀(甥姪女)와 혼인한 생질서(甥姪壻)로 이암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염정섭, “杏村 李岳의 『農桑輯要』 도입과 의의”, 한영우 외, 앞 책, 219-222 참조.

²⁰ 고려 후기 경상도에서 국가적 차원의 서적 간행을 진행할 때의 직제 구성과 직무의 분담에

으로 보아 강시의 간행 계획은 관의 층위에서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주에게 연락을 한 것은 효과적인 농서 간행을 위해 어떠한 성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 등 물적 지원은 물론 고위직에 있는 사람 등의 인적 자원과 영향력도 포함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강시가 후인들이 자신의 사적을 고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색과 설장수에게 서문을 써서 기록해 달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적 자부심의 작동은 물론 있었겠지만 이색과 설장수의 당대적 위상 그리고 강시와 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강시는 공민왕 6년(1357)의 과거 급제자로 이색과 교유 관계에 있었고,²¹ 설장수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설장수도 성균관 수학 시기에 이색과 돈독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²² 이색을 매개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강시와 설장수는 아마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 것이다. 아울러 이색은 당대 제일의 학자로 명망 높고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설장수는 공민왕의 관심을 받으며 당시 합주의 관찰 계수관(界首官)이었던 진주 목사 겸 권농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강시가 이 둘에게 서문 쓰기를 요청한 것은 명망가나 고위자에게 일종의 배서(背書, endorse)를 받기 위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이색과 설장수의 영향력과 권위를 빌려 농서 간행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농서 간행을 이념 선전의 장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것에 대한 배서, 어떠한 것에 대한 선전이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서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372년 중앙절 무렵에 쓴 설장수의 글을 보자.

나는 생각건대 옛날에 위정자에게 충성을 다한 것은 그 근본을 얻는 것에 불과한 데 ... 대개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먹는 것은 농업을 근본으로 한다 ... 앞에는 『상서』 “무일”이나 『시경』 “칠월”, 『논어』, 『맹자』에서 나온 “백성으로 하여금 때에 맞게 농사 짓고 목축하게 하라” 등 성현들의 훈계가 있고, 뒤에는 『관자』, 『범승지서』, 『제민요술』, 『사시유찬』, 『종시

대해서는 최연주, “고려 후기 경상도 지방의 서적 간행 체계와 운영 형태”, 『석당논총』 45 (2009), 103-138 참조.

²¹ 강시와 이색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는 강희설, 『양진당 강시』 (진주강씨 역사의 눈, 2017), 43-45 참조.

²² 설장수와 이색의 학문적 유대관계에 대해서는 백옥경, “여말 선조 설장수의 정치활동과 현실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46 (2008), 25-26; 양강, “설장수의 인적 네트워크와 『직해소학』의 편찬”, 『한국사상사학』 71 (2022), 170-172 등 참조.

직설』 등 저술들의 권면이 있다. 이 책의 편찬은 오히려 지극히 중요한데 대개 과거의 여러 책을 주워 모으고 당대의 이해를 헤아려 근본에 절실히 부합하니 참으로 살아갈 방도의 근원이다 …

본조에서는 농업을 선무로 여기도록 수령에게 요구하지만 경종, 양잠, 축목의 방법은 관련 저술이 없으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물며 경사에 있던 전적들이 신축년의 구란에서 모두 소멸되었는데, 지금 강사군이 그 남아 있는 좋은 것들을 발굴하여 다시 흥행시키고 사람마다 살아갈 방도를 알 수 있도록 [이 책] 간행하여 널리 전한 것은 실로 백성을 돌보고 기르는 국가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군주의 은덕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시키는 수령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간행은 유독 백성에게 이로운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사군을 얻는 것에도 경하해야 할 것이다.²³

이 글에서 민본과 농본 등 원론적 서술 외에 주목할 것은 수령으로서 강시의 역할에 대한 공감과 권농사로서 권농 업무에 대한 전문적 이해이다. 먼저 이 글은 수령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조정은 수령의 권농 업무와 교화 책임을 요구하고 수령은 군주와 조정의 요구에 부응하고 근본을 얻기 위해 마음을 같이한다면 다스려질 방도가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층위에서 개정에 소장된 농학 전적들을 1361년 홍건적(紅巾賊)의 난으로 인해 소멸되었을 때까지 계속 방치해 둔 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조정은 부작위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반면 강시와 같은 수령은 조정의 직접적 지시나 지원 없이 농서 간행의 실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주와 백성을 연결해 주는 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칭송받았다. 심지어 『농상집요』의 간행으로 인해 백성들이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국가는 강시 덕분에 다스림에 힘을 얻을 수 있었

²³ 倭長壽, “書農桑輯要後”. “余惟古之有忠於爲政者, 無過乎得其本而已 … 蓋國以民爲本, 民以食爲本, 食以農爲本, 未有無農而有食, 無食而有民, 無民而有國者也 … 觀夫無逸之書, 七月之詩, 及語、孟所載, ‘使民以時, 均井田, 樹桑柘, 畜雞雉豚, 口斧斤, 節網罟, 春省耕, 秋省斂’之語, 聖賢諄諄然規戒于其前, 《管子》《汜勝之書》《齊民要術》《四時類要》《種蒔直說》等書, 歷歷然敦勸于其後. 至於是書之作, 猶爲至要. 蓋摭摭已往之群書, 量度當時之利害, 切□□□□本而率□乎? 生理之源歟. 本朝課責守令, 必首先以農爲務. 然而播種耕耨之詳, 蠶桑畜牧之法, 未有成書, 以行于世. 況典籍之在京師者, 亦皆蕩盡於辛丑寇中. 今使君乃能舉遺書, 以重興之, 募工鏤梓, 廣布其傳, 使人人知有生之要道, 而遂其樂, 可謂上不負國家撫育黎元之心, 下能盡守令承流宣化之任. 嗚呼, 無愧乎古人已矣. 然則是書之行, 不獨斯民利益是爲喜, 亦當賀國家之得使君也.”

다는 평가까지 내려졌다. 이는 강시에 대한 의례적·상징적 찬사에 불과한 것일 수 있지만 백성과 국가에게 올바른 역할과 사명을 수행해 주는 집권층 치자로서의 책임 의식 및 사대부 관료로서의 정체성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다른 한편 수령의 역할을 역설한 이상 그 선무인 권농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설장수는 농서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역사상의 중국 농서를 열거하거나, 『농상집요』의 내용 및 체제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현재 고려에 농법을 정리하는 저술이 없다는 형편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 지식에 깊은 조예가 있다기보다는 농서의 이용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설장수가 권농사의 위치에 있어 농업 관련 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문적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색이 1372년 중추절 전후에 쓴 서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려의 풍속이 졸하고 인하여 생업을 영위하기에 박하게 하는데, 농사를 짓는 민가들은 하늘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만 하기 때문에 ... 인의(仁義)를 토대로 하여 도수(度數)를 만든 것은 성인의 알맞은 제도이며 사람의 일이 아름다워지는 이유이다 ... 그 경중(輕重)을 알지 못하고 의리를 해롭히며 법제를 무너뜨려 그 본심을 상실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또 어찌 백성의 죄만이라. 나는 그옥이 슬퍼하는 바이다. 대개 백성의 재산을 창제하고 왕도를 융성시키는 것이 나의 뜻인데도 마침내 이루지 못하는 데야 어찌하랴 ... 나는 일찍이 이 글을 대개 구경하고 맛을 들었다. 나는 우리 풍속을 민망히 여기고 깊이 염려하지 아니한 바 없는데, 조정에 선 지 하루가 아니면서도 한 번도 [이 책을] 간행할 것을 건의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그러나 비록 강군의 뜻이 나와 같다는 것을 이에서 알 수 있다. 백성의 재산을 창제하고 왕도를 융성시키는 그 일은 또 이에만 그치지 않는 데, 이에 대해서 강군도 일찍이 강론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기필코 [간행을] 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단을 물리치는 것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풍속이 변할 길이 없을 것이니, 이 책에 실린 것도 허문(虛文)이 되고 말 것이다. 강군은 더욱 힘쓰라.²⁴

²⁴ 李穡, “農桑輯要後序”. “高麗俗拙且仁, 薄於理生. 產農之家, 一仰於天 ... 本之仁義, 爲之度數者, 聖人之中制, 而人事之所以爲美也 ... 其不識輕重, 害義壞制, 失其本心如此. 又豈民之罪哉? 予竊悲之. 蓋制民產, 興王道, 予之志也. 而竟莫能行, 奈之何哉 ... 予於是書也, 蓋嘗玩而味之矣. 憫吾俗, 慮之非不深, 立于朝非一日, 不一建白刊行, 是吾之過也. 雖然, 姜

이색은 먼저 고려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지어서 늘 배불러 먹지 못하는 형편을 서술하면서 백성의 농업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논하고, 이어서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몹시 소박하게 지내는 데 비해 잔치에서 고기를 많이 이용해 화려하게 차리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인성으로서의 욕망 문제로 화두를 바꾸었다. 그러한 인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풍속함과 검소함 사이에 균형을 잘 잡고 인의(仁義)를 토대로 하여 사정을 헤아려 적당히 처리해야 한다는 도리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그 도리를 잘 몰라 농사 노동에서 도움이 되는 말과 소를 감히 죽이는 것과 같은 “경중을 모르고 의리를 해치고 법제를 무너뜨려 그 본심을 상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같이 이색은 고려인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것이 농업 지식의 부족보다 그들의 마음에 인의가 없기 때문이라 지적하여 농업 생산의 문제에서 풍속 개변과 도덕 교화의 문제로 의제를 확장시켰다.²⁵ 아울러 그러한 죄책을 자신과 같은 위정자에게 돌리면서 맹자의 말을 빌려 “백성의 재산을 창제해 주고 왕도를 융성시킨다[制民產, 興王道]”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제시하였다.²⁶ 이러한 지향은 사실 맹자로부터 이어져 온 “항산(恒産)의 마련”과 “항심(恒心)의 구축” 등 유교적 이념과 맞물려 고려 말 당시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사대부 관료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²⁷

이색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고려 풍속을 우려하지만 그것을 고치는 행동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겸손의 말 사이에 강시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삽입하였다. 직접적으로 『농상집요』의 가치와 간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 배치 방식으로 보아 대개 『농상집요』

君之志，同於予者，於此可知也。制民產，興王道，其事又不止此，姜君亦嘗講之乎？如欲必行，當自闢異端始。不然，吾俗無由變。此書所載，亦爲徒文矣。姜君尙勉旃。”

²⁵ 이와 관련하여 이색은 인간의 본성을 증시한 윤리·도덕적 정치론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고, 여말의 경제변동, 신분질서 혼란 등을 포함한 사회모순의 수습 목표와 방법이 사회구조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 개개인의 윤리·도덕의 확립에 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문원, “목은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목은연구회 편, 『목은 이색의 생애와 사상』 (일조각, 1996), 447 참조.

²⁶ 이러한 서술 경향과 비슷하게 사실 농민 생활에 관한 이색의 시가 작품에서도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는 전적으로 농민을 대변하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사대부 관료의 사명을 지키는 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시업, “목은의 군자의식과 민생·풍속사”, 목은연구회 편, 앞 책, 376-377 참조.

²⁷ 위은숙, 앞 논문, 144.

의 간행은 자신 지향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결국 이색은 그 간행의 필요성과 의미를 “제민산, 흥양도”라는 유교적 지향과 관련된 거대담론 속에 포섭시켜 거론하였던 것이다. 농서 간행과 농업 진흥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 중흥을 이루는 것은 이색을 비롯한 당대 대부분 사대부 관료들의 정치적 이상과 행동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²⁸

또 흥미로운 것은 이색은 농서 간행에 관한 강시의 뜻이 자신의 지향과 같다고 천명하면서 “제민산, 흥양도”를 위해서는 농서 보급과 같은 일에만 그치지 말자고 권면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색이 쓴 이 서문의 예상 독자는 누구였을까? 강시처럼 지향은 자신과 같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대부 관료들이었을 것이다. 즉 이색은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비전으로 포섭하려고 한 것이다.²⁹ 당대의 유종(儒宗)으로 추대받은 이색으로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 유교적 이상과 사대부 사명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농상집요』의 간행을 통해 지방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대부 관료층의 세력 판도를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강시가 서문 쓰기를 요청한 것, 그리고 설장수와 이색이 서문을 써준 것은 농서 간행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시는 당시의 정치적·사상적 수장인 이색, 그리고 계수관 겸 관농사로 재직한 설장수의 사회적 위상과 학문적 전문성을 빌려 농서 간행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한 것이다. 한편으로 이 글들은 분명히 농서를 직접 보고 사용하는 지방 수령이나 지식인들에게 읽힐 것인데, 그 기대효과는 농업 지식의 보급과 관농의 실행에 대한 독려에 국한하지 않았다. 농업 진흥을 통한 도덕 교화와 왕도 실현 등 사대부 역할과 사명도 서문에서 표명되었으며 농서의 간행을 통해 널리 전해지고 공유될 수 있었다. 지방 수령이나 지식인들 역시 농서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유교적 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려 말 『농상집요』의 지방 간행은 특정한 인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일부 집권층의 지적 권위 수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대상은 일반 백성이라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대부 관료라 하겠다. 그 목적은 농서 간행을 통한 유교 사회의 실현 등 역할과 사명을 담당할 수 있고 또 담당해야 하는 사대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선전함으로써 농서 간행과 농업 진흥 등 활동의 정당

²⁸ 이정호, 『고려시대의 농업생산과 관농정책』 (경인문화사, 2009), 262-267.

²⁹ 이현옥, 앞 논문, 150.

성을 확보하고 사대부의 사회적 토대를 확대하려 한 것이다.

3. 조선 초 농서 제작: 국가 농법 전범(典範)의 구축

조선 개창 이후 집권층으로 정착된 사대부 관료들은 국가 차원에서 농서 제작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또 신왕조의 명분 유지와 새로운 지배 질서의 구축을 위해 그렇게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농서 제작에 관한 조선 조정의 두 가지 자주적인 노력이 주목된다. 하나는 태종대 『농상집요』를 이두로 번역하고 보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종대 조선의 풍토 실정에 부합하는 농법을 조사, 정리하여 『농사직설』을 편찬한 것이다. 이같은 농서 제작과 이용에는 농업 지식을 통한 신왕조의 사회 지배 요구가 내재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조선 초 지배 질서 추구와 문물제도 정비 등 시대 배경과 관련지어 농서 제작을 통한 집권층의 지적 권위 수립 방식과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농상집요』의 번역: 외래 경험의 표준화와 시범적 보급

조선 초 예악이나 법률, 천문역법 등 제반 분야의 연구와 정비 사업에서 중국의 문헌 서적들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조선 초에 『농상집요』, 『사시찬요』, 『범승지서』 등 중국 농서를 적극 활용했고 그 중에도 농업 기술 연구나 농업 정책 추진에 있어 『농상집요』의 영향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⁰ 태종대 집권층은 『농상집요』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겪게 될 도전들에 대해 고민했는데 그 방안책 중의 하나가 『농상집요』를 이두로 번역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먼저 『농상집요』를 번역하게 된 것은 태종 14년 농법의 전수와 권농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에 능한 관료들을 지방으로 파견하면서부터였다.

우희열(禹希烈)·이은(李殷)·한옹(韓雍) 등이 사조하니, 왕지를 내려 주었다.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요 ... 이제 이은·우희열·한옹 등을 보내어, 군현에 가서 돌아보고 그 땅의 적의함을 살펴서 물을 한곳에 모아서 두거나 물길을 파서 끌어 내는 방법을 다할 것이며, 또 관개의 법을 행하여서 가뭄이나 장마에 대비할 것이

³⁰ 조선 초 이전까지 중국 농서의 이용 상황에 관한 개술은 김영진, 앞 논문, 67-70 참조.

며, 이어서 수예(樹藝)의 늦고 빠른 절기를 가르쳐서 ...”

처음에 이은이 상서하여 제방·관개·권과·경운의 일을 진달하니,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이 아뢰었다. “이은의 상서는 백성에게 이익이 있으니, 하교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네가 영의정·호조 판서의 집에 가서 의논하라.” 하니, 하운(河崙)·박신(朴信) 등이 대답하였다. “... 이은·우희열·한옹 등은 모두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뜻이 있는 자들이니, 마땅히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소서.” 한상덕이 아뢰니, 임금이, “좋다.” 하고,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한상덕이 또 아뢰었다. “원조의 『농상집요』는 백성들에게 유익하나, 다만 그 글이 어려워서 사람마다 쉽게 깨달아서 알지 못하니, 원컨대 본국의 이어(俚語)로써 번역하여 향곡의 소민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전 대제학 이행(李行)과 검상관(檢詳官) 곽존중(郭存中)에게 명하여 책을 만들어 판각하여 반행하게 하였다.³¹

태종 14년 말 조정에서 우희열, 이은, 한옹 세 사람을 6도에 파견해 농상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이 파견은 처음에 지방 농업 진흥에 관한 이은의 상서와 영의정 하운, 호조 판서 박신 등의 의견에 따라 제기되었고, 우대언 한상덕이 이들의 주장을 상달하여 태종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성사된 것이다. 이어서 한상덕은 계속해서 『농상집요』의 이로움을 언급하면서 본국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이어(俚語) 즉 이두로 번역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중에 한상덕이 『농상집요』의 양잠 부분을 이두로 번역해 본 것으로 보아 이 상언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한상덕 자신의 주장이었을 것이다.

농업 전문가의 파견과 『농상집요』의 번역에 관한 두 상언을 함께 기록한 것은 이 두 상언이 시간적으로 연속되거나, 당시 논의의 맥락상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매개자는 한상덕이었다. 한상덕은 “백성에게 유익하다”는 접점을 통해 농업 전문가의 파견과 『농상집요』의 번역 두 사안을 연결시켰다. 즉 그는 농업 전문가의 파견이 백성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이은의 상서를 전달한 다음에 백성의 이익을 위한 전문가 파견과 권농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농상집요』의 번역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농상집요』의 번역은 단지 백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방 관원의 효과적인 권농을 위한 것이기도 했

³¹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12월 6일 을해.

다. 그러나 지방관이 대부분 한문에 익숙한 식자층인데 농서의 이두 번역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획된 것일까? 이두는 한자를 빌려 조선 방언을 표기하는 서면 작성법이다. 따라서 농서의 이두 번역본은 한자를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읽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15세기 전후까지 이두는 주로 지방 행정 사무를 보조하는 서리(胥吏), 아전(衙前) 등 하급 관리들이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소송 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되고 있었다.³² 따라서 『농상집요』의 이두 번역본은 지방 하급 관리에게 제공하는 이해하기 또는 전수하기 편한 권농 지침서로 기대되었을 것이다.³³ 결국 농업 전문가의 파견과 더불어 『농상집요』의 번역을 통한 하급 관리의 행정적 동원은 지방 권농의 활성화 나아가 지방 통치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태종의 명령에 따라 이행과 곽존중이 『농상집요』를 이두로 번역하고 판각하여 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관련 번역본이 남아 있지 않지만 16세기 초반 중종 대 경상감사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이 간행한 『농서집요(農書輯要)』는 원래 있던 이석본(吏釋本)에 언해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석본은 바로 태종대 『농상집요』의 농업 부분을 이두로 번역한 『농서(農書)』로 추정되고 있다.³⁴ 이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농상집요』의 양잠(養蠶) 부분에 대한 번역 작업이다.³⁵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양잠경험촬요』의 후기에 따르면 태종 15년 5월에 우대언 한상덕이 왕지를 받들어 『농상집요』의 양잠 부분을 발췌하여 이두로 번역한 뒤 도관찰출척사 안등(安騰, ?~1417)이 각수(刻手)를 모집하여 그달에 간행 사업을 완료하고 이 책을

32 이두와 하급 관리 간의 상관성에 대해 일찍이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1893)는 이도(吏道)가 서리들이 사용하는 어미를 뜻한다고 하였고, 류렬(1983)은 이두를 “관리들의 글” 또는 “관들이 쓰는 관청의 글”로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중, 『조선전기 이두 연구』(역락, 2016), 14 참조.

33 이광린은 『양잠경험촬요』와 같은 『농상집요』의 이두 번역본은 농민들을 지도할 지방의 유력자 즉 감고를 상대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광린, “『양잠경험촬요』에 대하여”, 『역사학보』 28 (1965), 37 참조.

34 중종대 『농서집요』의 간행 경위와 내용, 그리고 태종대 번역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용섭, 앞 논문 (1987); 이호철, 앞 논문 (1990); 오인택, “조선초기의 『농서집요』 간행에 대하여”, 『부대사학』 17 (1993), 255-272 등 참조.

35 『양잠경험촬요』의 편찬 과정과 이두 사용에 대해서는 이광린, 앞 논문, 25-40; 이철수, “양잠경험촬요 이문해석”, 『한국학연구』 1 (1989), 43-71 등 참조. 아울러 통문관 주인 소장의 『양잠경험촬요』의 영인본은 이철수, 『양잠경험촬요의 이두연구』(인하대학교출판부, 1989), 221-304에서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군현에 반포했다고 한다.³⁶ 사실 앞에서 『농상집요』의 번역 작업을 맡은 이행과 곽존중은 이미 양잠 부분에 대한 간행과 번역 작업을 한 바 있다.

처음에 전 예문관 대제학 이행이 『농상집요』 내의 양잠방(養蠶方)을 뽑아 내어, 자기 스스로 경험하였더니 수확이 보통 때의 배(倍)나 되므로 드디어 판간해 세상에 행하게 하였다. 국가에서 민간이 중국어를 알지 못할까 염려해 의정부 사인 곽존중에게 명하여, 본국의 언어(俚語)를 가지고 「양잠방」 구절에 협주(夾註)를 내게 하고 또 판간하여 광포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본래부터 익혀 온 것이 아니라서 모두 양잠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다시 명하여 각도에서 한 광(閑曠)하고 뽕나무가 있는 곳을 택하여 채방을 나누어 보내고, 전농시(典農寺)에 속한 노비에게 그 잡역을 면제하여 주며 그들로 하여금 양잠하여 민간에 보이게 하였다. 또 후궁으로 하여금 친히 자양하게 하여 많은 소득을 얻었다.³⁷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목은 이행은 처음에 『농상집요』의 양잠 방법을 추출하여 그대로 직접 양잠을 해보고 그 유용성을 증험하고 난 후에 조정에서 이 “양잠방”을 널리 간행하게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양잠 경험은 일단 이행의 시험을 거쳐 개별 조선인의 양잠 경험으로 전환되었고, 그 개인 경험은 조정에서 인정받아 조정의 간행 사업을 통해 사회에 유통되었다. 둘째 대목은 처음에 간행된 이행의 “양잠방”은 조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곽존중으로 하여금 이두로 해석하고 다시 간행하게 하였는데, 그 해석의 방식은 각 구절에 이두로 협주를 달아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양잠경험촬요』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같은 번역의 과정에서 집권층은 조선인의 언어와 생활 실정에 맞춰 지식의 재구성과 새로운 텍스트의 창출을 시도했고, 언어적·경험적 측면에서 중국의 농업 경험을 조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 지식으로 토착화하되 표준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문을 이두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농업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양잠경험촬요』의 번역은 1395년에 편찬한 『대명률직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축조번역(逐條翻譯) 또는 축자직해(逐字直解)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³⁸ 이 방식의 특징은 대체로 (1) 문

³⁶ 이철수, 같은 책, 303. “永樂十三年五月□日, 右代言(臣)韓尙德敬奉王旨, 翻譯蠶書, 刊行頒布. 都觀察黜陟使(臣)安騰承命, 募工鋟梓, 是月告訖業, 頒諸郡.”

³⁷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24일 기유.

법상 한문의 구조를 조선 방언의 어순에 맞춘 구조로 바꾸거나 문장의 논리 구조를 조정하는 것, (2) 어휘상 조선 방언의 관용 어휘로 한자 어휘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표 1>의 “나방이 알을 낳게 하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문 용어를 조선말의 관행대로 그 표현을 전환했다. 원문의 “치(置)” 자는 “벌여[排] 둔다[置]”로, 원문의 “이(移)” 자는 “옮겨[移] 오다[來]”로 바꾸었고³⁹, 누에알 받아종이를 뜻하는 원문의 “연(連)” 자는 조선의 관용어 “누에 종이[蠶紙]”의 “지(紙)” 자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문장 논리 구조의 경우 “누에알 받아종이 씻기”의 원문에서 “(겨울에) 물을 극히 차갑지 않게 하여 거기에 연을 이틀 동안 담갔다가 꺼낸다”는 동작의 선후 관계를 “(겨울에) 잠지를 물에 이틀 동안 담갔다 꺼내야 되므로 (잠지가) 극히 차가워진 바 없지 않으니”라는 사실 서술의 인과 관계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원문처럼 물을 극히 차갑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잠지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소개해야 하는 맥락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험적인 측면의 번역과 관련된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한상덕이 『농상집요』를 이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선 본토의 경험적 지식을 상당히 동원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누에 채반[蠶箔]과 누에알 받아종이를 설치해 두는 장소에 대해 원문에서 “높고 밝으며 청량한 곳”이라고만 제시한 데 비해 한상덕은 청당(廳堂)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옷가지나 서까래 등을 사용해 높은 평상으로 만들어 채반과 종이의 거치대를 마련하는 사항까지 소개하였다. 그리고 겨울에 잠지를 씻을 때 물을 차갑지 않게 만들기보다 조선 기후의 실정을 염두에 두고 차가운 물을 써도 잠지가 얼지 않는 방법, 즉 따뜻한 방 안에 두거나 계속 새 우물물로 갈아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한상덕과 같은 집권층은 직해의 번역 방식을 취하더라도 중국 경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었고

38 심경호는 국어학적으로 이두문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문을 이두로 역해하는 “직해”의 체계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대명물직해』의 예를 들어 “직해의 문장은 한문의 동-빈 구조를 우리말의 어순에 맞추어 목적어-술어의 구조로 바꾸고 이두를 붙였을 뿐만 아니라, 毆→犯打, 聽→許聽과 같이 글자를 보족하고 대체하여 한문의 뜻을 밝혔다. 또 願離의 경우에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自願棄別로 번역하였다”고 서술하면서 그러한 “직해” 체계의 구상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심경호, “조선전기의 주해본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0 (2004), 222-224 참조.

39 이같이 원문의 1음절 한자에서 바뀌어 온 2음절 한자여 표기는 해당하는 조선말의 고유어로 읽으면 문맥의 흐름에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중, 앞 책, 35 참조.

조선 실정에 맞춘 본토 경험을 동원해 『농상집요』의 양잠에 관한 중국의 경험적 지식을 조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착화시켰다.

표 1 『농상집요』 원문과 『양잠경험촬요』 번역 내용의 비교⁴⁰

	『농상집요』 원문	『양잠경험촬요』의 이두 해석
나방이 알을 낳게 하기	擇高明涼處，置箔，鋪連。候蛾生足，移蛾下連。 (높고 밝으며 서늘한 곳을 골라 채반을 설치해서 누에알받이종이를 깔아 놓는다. 나방이 알을 낳은 후에 나방을 누에알받이종이에서 옮긴다.)	高明 清涼 廳堂良中 柅木 椽木 等乙用良 平床 樣以 高足 造排爲遣 其上良中 淨箔 排置 後 厚紙乙 鋪張 前件 擇出 雌雄 蛾乙 移來 在置 (높고 밝으며 청량한 청당에 잇가지, 서까래들을 써서 평상 모양으로 다리를 높게 만들어 배치하고 그 위에 깨끗한 받을 배열해 둔 후 두꺼운 잡지를 펴 깔고, 먼저 골라낸 암수 나방을 옮겨오다 놓아둔다.)
누에알 받이 종이 씻기	冬節日及臘八日浴時，無令水極凍，浸二日，取出。 (동짓날과 설달 초팔일에 누에알받이종이를 물로 씻을 때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하며 이틀간 담가 두었다가 다시 꺼낸다.)	冬節日 及 臘八日 浴洗乙 沈浸 過二日爲去沙 取出爲臥乎等用良 極凍爲乎所 無不冬爲去有 等以 不寒 房內 在乎矣 萬一 極凍爲去等新汲 井水乙用良 浸之爲齊 如前 不解爲去等 解凍爲限 換水 再浸 (동짓날이나 동지 설달 8일에 씻길 때에는 물에 깊게 담그고 2일이 지난 후에야 꺼냄으로 인해 크게 어는 일이 없지 않은 까닭에 출처 않은 방 안에 두되 만일 크게 얼거든 새로 길어온 우물물에 담근다. 그래도 여전히 녹지 않으면 해동될 때까지 물을 갈아 다시 담근다.)

사실 위와 같은 번역이라는 토착화 작업은 그 주체가 집권층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양잠 지식에 대한 표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집권층은 이두 번역을 통해 문장의 논리 구조와 전문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양잠에 관한 시간·장소·수단·도구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제시함으로써 외래 경험을 본국의 일반적 양잠법으로 표준화시킨 것이다. 동시에 중국 농서, 농업 지식에 대한 해석 방법과 이해 방식을 표준화시킴으로써 농업 지식에 대한 집권층의 지적 권위를 수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⁴¹ 하지만 『농상집요』의 이두 번역이 엄격히 원문에 충

⁴⁰ 이 표는 이철수, 앞 책, 169-190, 221-304에 나온 한문 및 이두 원문, 그리고 한국어 번역문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농상집요』 원문 부분의 한국어 번역문은 최덕경 역주, 『농상집요 역주』 (세창출판사, 2012), 27과 281 참조.

⁴¹ 『대명률직해』도 실무 관리들이 한문 율문을 이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한 것이지만 조선 초 『대명률』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 사법 실천을 추

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일원적, 배타적인 해석을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실천을 위해 일단 하나의 표준을 제시해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 태종 17년의 기사로 돌아가 보면 조정의 “양잠방” 간행에 관한 셋째 대목이 주목된다. 즉 태종이 행정적 수단으로 잠실(蠶室)을 설치해 양잠을 시범함으로써 “양잠방”의 현실 수행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다. 태종은 『농상집요』의 번역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다음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급하려고 할 때 또 하나의 난제를 겪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본래부터 익혀 온 것이 아니라서 모두 양잠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⁴²는, 백성들의 낯선 지식에 대한 무관심 또는 생소함으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은 원래의 방법론적 지식으로서의 “양잠방”을 행정 명령의 시행 대상으로 옮겨서 국가적 차원에서 “양잠방”의 현실 적용을 실천함으로써 그의 보급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한 현실 적용의 실천 차원에서 후궁에 궐내 잠실(闕內蠶室)을, 각지에 도회 잠실(都會蠶室)을 설치하여 백성에게 양잠 활동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국왕이 친경(親耕)하여 농경의 시범을 의례적으로 보이기 위해 설치한 전전(籍田)과 같이 궐내 잠실은 왕비들이 시범적으로 양잠을 하고 양잠 의례를 지내는 공간이었다. 도회 잠실은 행정 관원의 운영과 감독, 관노비 등의 채상(採桑)과 양잠 활동에 기반하여 실제적으로 민간에게 양잠 방법을 전수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⁴³ 태종은 처음에 잠실의 설치를 계획했을 때부터 그 목적은 양잠 시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에게 올바른 양잠법을 전수하는 데 있다고 천명하였고⁴⁴ 이후에도 그 취지를 거듭 강조하였다.⁴⁵ 조정에서 관료들은 태종

구하는 분위기에서 『대명물지해』는 한문 음문을 번역함으로써 중국 법률의 해석 방식을 규정하고 중국 법지식의 이해 방법을 표준화시킨 시도로 볼 수 있다. 『대명물지해』의 번역 취지 및 양상에 대해서는 장경준, “조선 초기 대명물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52 (2015), 451-490 참조; 조선 초 『대명물』 적용을 위한 여러 주석서의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정궁식,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대학교 법학』 50:4 (2009), 35-80 참조.

⁴²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24일 기유. “然非我國素習，皆不樂爲之。”

⁴³ 조선 초기 후궁 양잠의례의 전개, 궐내잠실과 도회잠실의 설치·운영 상황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09), 40-54, 61-87 참조.

⁴⁴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4월 1일 계해. “上曰：‘予設蠶室，欲令民間學養蠶法也。’”

⁴⁵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1월 11일 무술. “定各道蠶所，遣使監之 … 分置斯所者，所以使民效之也。”;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17일 인신. “命曰：‘予聞外方養蠶有弊，然各置蠶室者，非以有利於國，欲使人民見聞取法而爲之。若家家皆知養蠶之法，則將欲罷之。今後但令其官守令監養，毋遣採訪。’”

이 잠실의 법을 설치한 것을 만세토록 무궁한 이치를 보여준 업적으로 서술하거나,⁴⁶ 잠실에서 백성에게 가르친 양잠법이 지당하다고 찬양하였다.⁴⁷ 이는 국가 사업의 성취와 국왕의 성교(聲敎)와 덕화(德化)에 대한 의례적 찬사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권층이 보유한 양잠 지식의 정확성과 그 지적 권위를 강조하고 백성에 대한 지배와 교화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 필요한 수사이기도 하였다.

이같이 잠실의 운영과 양잠의 시범은 중요한 생산활동으로서의 양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백성에게 시사하고 또 올바른 양잠법을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연출’로서 백성에게 집권층의 지적 권위와 교화 권리를 재확인시킬 수 있었다. 이두로의 번역이 양잠 지식에 대한 지적 활동 측면의 문서적 표준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범적 보급은 그 연장선상에서 양잠 지식에 대한 정치적 활동 측면의 실천적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양잠 방법에 제시되는 누에의 성장 시간, 잠종(蠶種)의 사용량, 고치실의 수확량 등은 양잠의 실천에서 표준값으로 여겨져⁴⁸ 양잠법 전수를 책임지는 관원에 대한 포폄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⁴⁹

이상과 같이 태종대는 『농상집요』를 이두로 번역함으로써 언어적·경험적 측면에서 외래 농업 경험을 토착화하면서 중국 농서의 이해 방식을 규장함으로써 농업 지식을 표준화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적전·잠실 등의 설치와 농법·양잠법의 시범을 통해 표준화된 농업 지식을 사회적으로 보급하려 했다. 이러한 지식 표준화와 시범적 보급의 과정에서 집권층은 올바른 지식을 보유하고 백성

46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24일 정해. “判承文院事李迹上書曰: ‘蠶桑之利, 天下古今之所共重也. 吾東方未得其法, 未見其効, 不以為重. 今殿下設公桑蠶室之法, 示萬世無窮之理, 恩甚渥也.’”

47 『태종실록』 권36,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校書校理金尙直等陳言: ‘蠶桑, 王政之大者也. 故國家設公桑蠶室, 其示民養蠶之方者至矣.’”

48 『단종실록』 권12, 단종 2년 9월 16일 갑자. “議政府據戶曹呈啓: ‘… 《養蠶方》云: ‘蠶必晝夜飼, 若頓數多者, 蠶必疾老; 少者, 遲老.’ 註云: ‘二十五日老, 一箔可得絲二十五兩; 二十八日老, 得絲二十兩. 若月餘或四十日老, 止得絲十兩.’ 今每一都會, 取蠶種十張養之. 其蠶母及摘桑人, 至役他邑奴婢, 甚為有弊, 而得絲不多. 請自今罷都會, 於宜桑諸邑道左右倉庫·果園隙地及楮田·菜圃·屯田之畔, 依方植桑. 多收蠶種, 分授諸邑, 或一張或二張. 擇定官婢能養蠶者為蠶母, 令官奴婢·日守採桑 …’ 從之.”

49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윤1월 16일 신유. “議政府據戶曹呈啓: ‘京外蠶室養蠶之法及一年繭絲之數, 累次受教立法, 然各官守令不肯用心養蠶. 繭絲之數, 皆不如法, 實為不便. 自今京外蠶室官吏殿最時, 以養蠶多少, 為之褒貶.’ 從之.”

을 교화할 만한 지적 권위와 지배 정당성을 구축하고 시사하였다.

2) 『농사직설』의 편찬: 노농 동원을 통한 조선 풍토의 포착

주지하다시피 세종이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된 배경에는 “오방의 풍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농법은 옛 농서와 다 같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되고 있었다. 심는 농작물이나 쓰는 농법이 “풍토에 알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풍토부동(風土不同)의 인식이 이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고려 말부터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본국의 지역적·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특히 세종 대의 문물제도 정비와 과학기술 추진 과정에서 작용하였다.⁵⁰ 예컨대 의약 부문에서 풍속부동(風俗不同)으로 인한 약재와 약방의 의토성(宜土性)에 대한 중시, 언어문자 부문에서 풍토와 성기(聲氣)의 차이로 인한 본국 문자 창제에 관한 요구, 천문역산 부문에서 북경과 서울의 기준지 차이로 인한 지방시(地方時)에 대한 강구 등이 그것이다. 한편으로 세종대는 신왕조 집권체제의 재편과 맞물려 명실상부한 유교국가의 건설을 위해 유교적 보편성과 조선적 개별성을 조화시켜 문물제도와 과학기술의 범형(範型)을 구축하려고 했는데,⁵¹ 그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조선의 지역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농업 부문에서 풍토 차이의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의 위치·토양·기후 등에 알맞은 농법의 모색을 전개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 분위기 속에서였다. 그렇다면 세종대 『농사직설』의 편찬은 어떻게 집권층의 풍토부동 문제 처리, 과학 범형 구축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하고, 또 다른 분야와 어떻게 같고 다를까?

먼저 농업 부문에서 풍토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태종대에 나타났다.

권농의 명령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소민은 마땅히 농사에 힘쓰는 것을 급무로 하여야 하고 수령은 오로지 농상을 권과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 도의 주현이 풍토가 같지 않으므로, 심는 곡식도 본래 스스로 의토(宜土)가 다르고, 같고 심는 절후(節候)도 또한 빠르고 늦음이 있습니다. 원컨대, 의토의 곡식과 파종하는 절후를 갖추어 써서 포고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권과하는 방도를 알도록 하여, 때를 알려 주면 거의 백성들이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⁵⁰ 여말 선조 “풍토부동론”에 대한 개설적인 소개는 구만옥,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들녘, 2016), 58-62 참조.

⁵¹ 구만옥, “세종, 조선 과학의 범형을 구축하다”, 『한국과학사학회지』 35:1 (2013), 204-210.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들의 전지를 보았는데, 일반 곡식은 그 성숙하는 데 선후가 있었으니, 어찌 땅과 곡식 종자의 죄이겠는가? 이것은 인력(人力)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일찍이 정부에 명령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권과에 힘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서리가 내리기 전에 익지 않는 벼가 없는데, 정부에서 어찌하여 과인의 뜻을 모르는가? 곡식의 이름과 파종의 절후는 노농이 아는 것이니, 포고할 필요가 없다.”⁵²

의정부는 조선 각도의 풍토가 다르므로 각각의 풍토와 그에 알맞은 농법을 조사·반포하여 수령들이 그것을 전수하게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태종은 일단 풍토 차이의 존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풍토 차이에 따른 농업 생산의 잘못을 수령의 권농 업무 부진으로 돌렸다. 한편으로 곡식 이름이나 파종 절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농업 지식과 기술을 가진 주체인 노농에게 상당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태종의 입장에서 수령은 풍토 차이에 관한 농업 지식을 가지고 농민들을 기술적으로 지도하기보다 효율적인 행정력의 발휘를 통해 농업 지식을 보유한 농민들의 농사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 풍토의 문제는 중국과 조선의 풍토 차이가 아니라 조선 국내 각도의 풍토 차이라는 점, 각지의 풍토를 잘 아는 사람이 그곳에 살면서 농사짓는 노농으로 인지되고 있는 점, 풍토 문제의 해결은 아직 국가적 차원의 의제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세종 대에 와서 농업 부문의 풍토 문제는 국가 의제로 부상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농사직설』의 서문에 따르면 세종은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적성이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현의 노농들을 방문하게 하여, 농토의 이미 시험한 증험에 따라 갖추어 아뢰게 하였다”고 한다.⁵³ 다만 태종대의 위 기사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대목이 주목된다. 첫째 여기서 “오방의 풍토가 다르다”는 것은 중국과 조선을 두고 풍토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 “오방”은 중국(中國)과 사이(四夷)를 아울러 지시하는 것보다 “오방의 산천과 신령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등의 언급처럼 조선 전역을 가리키는 것으

⁵²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1일 을사.

⁵³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16일 신유. “以五方風土不同, 樹藝之法, 各有其宜, 不可盡同古書, 乃命諸道監司, 速訪州縣老農, 因地已試之驗具聞.”

로 보인다.⁵⁴ 다시 말해 농업 부문에서 다루는 풍토 문제는 처음에 의약 부문에서 당약(唐藥)과 향약(鄕藥)의 대비, 언어문자 부문에서 화어(華語)와 향언(鄕言)의 대비처럼 중국과 조선의 지리적 요소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듯하다. 결국 풍토부동의 문제는 조선 각지의 풍토가 다르므로 중국 농법은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조선 전역에서는 획일적으로 쓸 수 없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집권층은 조선 각지 간의 풍토 차이를 고려하려고 한 것도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남방의 농법을 북방 지역에서 보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농사직설』 편찬 전의 조사 과정에서 세종은 평안도와 함길도의 농업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삼도의 선진적인 농법을 조사하여 북방지역에 보급하려 한다고 했다.⁵⁵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보다 균형있는 전세수취 제도인 공법(貢法)을 정비하고 전국의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삼도 선진 농법의 보급 대상은 북방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여진다.⁵⁶ 그렇다면 농업 부문에서 왜 풍토부동의 논리가 제기되고 또 이 논리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사실 조선 초에 중화문물의 구현이라는 과제 하에 집권층에게 조선과 중국의 풍토 차이가 인식되었더라도 다소 거북스러운 관념이었고, 풍토부동이라는 표현은 조선에서 중화문물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수사로 지적된 것이다.⁵⁷ 일부 연구자의 견해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서 풍토부동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사대부층이 주자학의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의 강남 농법을 조선에 도입하기 위해 화북 농법 위주의 중국 농서 이용에 치중하는 국면을 타개할 만한 전략적 수사를 활용한 것이다.⁵⁸ 이러한 의미에서

54 조선 초의 실록 기사를 보면 “오방지기(五方地祇)”, “오방지신(五方之神)”, “오방토룡(五方土龍)” 등의 용어들이 국가 제사에 관련된 내용에 많이 나타난다. 물론 세종 30년 1월 18일의 기사처럼 이상(李相)이 중국과 조선의 제도 차이를 논할 때 한 “어린애의 우는 것은 오방에 구별이 없다(赤子之啼, 無有五方)”라는 말에서 오방은 중국과 조선을 포함한 세계 개념, 또는 추상적인 광역적 공간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다만 비교 대상이 특별히 제시되지 않거나 국내 사정만 논할 때 거론되는 오방은 조선 전역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문제없을 것 같다.

55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13일 갑오; 『세종실록』 권41, 세종 10년 7월 13일 계해.

56 서정상, 앞 논문, 47-55; 김상태, 앞 논문 (2010), 14-21.

57 문중양, “세종대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 『역사학보』 189 (2006), 43-47; 문중양, “15세기의 ‘풍토부동론’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 162 (2013), 48-54 등 참조.

결국 농업 부문의 풍토부동은 수사로 존재하는 중국과의 차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조선 전역 각지의 풍토를 포괄해 지시하는 공간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풍토 관념은 『농사직설』 서문에 보이는 둘째 대목으로 연결된다.

둘째 대목은 태종이 노농을 풍토 지식을 가지는 존재로 취급한 것과 같이 세종을 비롯한 집권층도 조선 풍토에 부합하는 농법을 조사할 때 노농에게 신뢰를 보이고 그들의 지적 자산을 적극 동원하였다.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 볼 때, 노농이란 농업 지식과 영농 경험이 풍부한 농민을 가리킨다.⁵⁹ 『농사직설』을 편찬할 때 집권층이 노농을 동원한 것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시 조선에 입수된 중국 농서에는 강남 농법에 관한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전 농업을 직접 행했던 하삼도의 경험자들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주요한 출처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농에게 지식을 얻은 뒤에 그들의 존재를 서문이나 권농교서에서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조선의 풍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천명한 이상, 조선의 풍토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노농의 존재는 자국 농서 제작 취지의 반영과 본토 농업 지식 진실성의 구현에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서 편찬과 보급을 담당하는 집권층의 지적 권위 수립에서 활용할 만한 명분적 자원으로 나타난다.

사실 조선 초의 집권층은 노농의 영농 경험을 중요시하고, 이를 농업 정책 제정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세종 4년과 21년에 맥종이 부족한 상황에서 “묵은 보리와 밀[陳大小麥]”의 종자를 사용할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좌의정 이원·참찬 허조 등이 계하기를, “『농상집요』에 곡식 종자를 수장하는 법에 이르기를, ‘묵은 대·소 두 가지 보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또 노농이 이르기를, ‘일찍이 3년 묵은 보리를 심었는데, 결실이 새 보리 종자와 다름이 없다.’ 하였는데, 백성들이 반드시 그러한 줄을 모를 것입니다. 금년에 두 가지 보리 종자가 모자라게 되었으니, 각지의 관름(官廩)에 영을 내려, 묵은 보리가 있으면 모두 내어주어 심도록 하고 ...”⁶⁰

58 이태진, “14·15세기 농업기술의 발달과 신흥사족”, 앞 책(각주 6), 91-106; 문중양, 앞 논문, 43-52 등 참조.

59 노농의 계층적, 신분적 요소에 관하여 그들은 3~5정의 노동력을 거느리고 1~2결의 토지를 집약적으로 전지하는 소농민층에서 성장하여 비교적 안정된 영농기반을 확보한 양인 농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정상, 앞 논문, 67-81 참조.

60 『세종실록』 권17, 세종 4년 8월 22일 병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농서집요』의 수곡종조(收穀種條)에 ‘묵은 대소맥(大小麥)’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들으니 장단(長端) 사람 이길(李吉)이 묵은 소맥을 심었는데 결실하는 것이 새 종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각 도의 농민으로서 만일 소맥 종자가 떨어진 자는 각 고을에 저축한 묵은 소맥을 꾸어 주어서 파종하게 하소서. 대맥은 비록 농서에 보이나, 경험한 사람이 말하기를, ‘다만 썩만 설 뿐이고 결실하지는 못한다.’고 하오니, 노농에게 물어보게 하여,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소맥의 예(例)에 의하여 나누어 주어 심게 하고, 만일 경험한 자가 없으면 적전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⁶¹

중앙 관료들은 『농상집요』에서 언급한 진대소맥의 종자가 심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노농의 경험을 원용하였다. 진소맥의 경우 노농은 진소맥 종자와 신소맥 종자의 결실이 차이가 없다고 들었기에 관료들은 신소맥이 부족한 경우 진소맥 종자의 이송과 사용을 권장하였다. 이같이 노농의 경험적 지식은 『농상집요』와 같은 중국 농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고 정책 제정에서 참조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대맥의 경우 중국 농서에서 진대맥을 쓸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어떤 경험자가 진대맥 종자를 심었더니 결실하지 못했다고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는 진대맥 종자의 결실 여부를 다시 노농에게 물어보고 이를 심은 경험이 있는 노농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고 시험 삼아 심게 하기로 하였다. 집권층은 노농을 일반인이나 농서보다 더 정확하고 모범적인 농사 경험 및 농업 지식을 가진 권위적 존재로 취급한 모습으로 보인다. 노농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농업 지식의 권위를 가지고 집권층이 올바른 지식을 획득, 검증하는 데 협조해 줄 만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같이 노농 지적 존재의 활용은 지식의 획득, 명분의 유지 두 가지 측면에서 집권층의 지적 권위 수립에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은 집권층의 지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흔들게 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노농의 지적 권위를 활용하는 것과, 그것을 상대화시켜 자신의 지적 우위를 드러내는 것은 집권층 지적 권위 수립의 두 가지 측면이라 하겠다. 후자의 경우 주로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집권층은 노농의 경험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노농의 지적 권위를 상대화시켰다. 『농사직설』의 서문에서도 말했듯이 각 도의 감사들이 노농을 방문하여 조사, 수집한 농법은 노농의 말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해당 농토에서 이

61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16일 임술.

미 시험하여 검증한 것이다[因地已試之驗]. 앞 세종 21년의 기사에서 보이듯이 진대맥을 심어본 노농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조정 대신에 시험하게 하고, 없으면 조정이 직접 적전에서 재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노농의 협조를 통해서든 조정의 직접적 시험을 통해서든 시험을 통한 집권층의 농업 지식 검증 작업이 필수로 전개되었다. 아울러 전강(全強)이라는 사람은 무술년(1418)과 무신년(1430)에 각각 교하(交河)와 영흥(永興)의 수령에 임했을 때 노농에게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벼 종자가 있는데 그것이 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들었으나 자신이 아직 시험하여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세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전강은 직접 증험한 후에야 세종에게 상언하였고 세종은 그 벼 종자를 각 도에 나누어 주고 관에서 시험해 보라고 하였다.⁶²

이같이 노농의 지식에 대한 집권층의 시험과 검증은 일차적으로 그 농업 지식의 진실성과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 수용자의 농사 실천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 지식 생산자인 집권층의 지적 권위가 강화되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집권층의 입장에서 노농은 농업 지식을 지닌 권위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회 지배 질서 하에 지적 권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집권층은 노농의 경험을 정리, 보급하는 과정에서 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보유하는 절대적인 지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집권층은 농서 텍스트의 제작 과정에서 노농의 경험에 대한 문자화 처리를 통해 지적 권위를 수립한 것이다. 『농사직설』의 사적 의미 중의 하나는 농민의 지혜와 경험을 문자화시켜 농서로 만든 데 있는데,⁶³ 서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사직설』은 노농의 경험에 대한 취사와 정리[就加詮次], 그리고 『농상집요』를 비롯한 기존 농서 내용에 대한 참고와 발췌[蒐輯諸書, 披閱參考, 祛其重複, 取其切要]를 통해 편찬된 것이다.⁶⁴ 먼저 문자화 처리 자체가 문자를 모르는 노농에 대한 식자층인 집권층의 지적 우위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문자화 처리는 노농에게 얻은 지식의 텍스트에 대한 정리 외에 그것과 문헌 지식 텍스트 간의 조율 작업도 포함한다. 집권층은 문헌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에 대한 조율과 재배치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농상집요』와 『농

62 『세종실록』 권79, 세종 19년 11월 29일 을묘.

63 염정섭·소순열, 『농업기술과 한국문명』 (들녘, 2021), 237-239.

64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16일 신유. “又命臣招, 就加詮次, 臣與宗簿少尹臣卞孝文, 披閱參考, 祛其重複, 取其切要, 撰成一編, 目曰《農事直說》.”;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23일 신해. “歲在己酉, 蒐輯諸書, 撮爲《農事直說》.”

사직설』에 나온 “곡종(穀種) 준비”의 다음 내용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 2. 『농상집요』와 『농사직설』의 곡종 준비 내용 비교

『농상집요』	『농사직설』
《제민요술》: 무릇 오곡의 씨앗은 습기에 젖어 눅눅해지면 싹트질 못하고 싹이 트더라도 죽어버리고 만다. 잡다한 종자가 섞여 있는 것은 이삭이 이르거나 늦게 패어 고르지가 않고 곡식을 쪼어도 싹이 적게 나며, 잘 도정하기도 어렵다 ... 《범승지서》에 이르기를, 눈 녹인 물은 오곡을 정화하여 가뭄으로부터 작물이 견딜 수 있게 한다. 매년 겨울에 저장해둔 눈 녹인 물을 그릇에 담아 땅속에 묻어 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종자를 다루면 항상 두 배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다 ...⁶⁵	9곡의 종자를 거두어 견실한 것으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눅눅하지 않은 것을 취한다. (음은 올음이다. 종자가 견실하지 못하면 이듬해 곡식의 이삭도 역시 부실하게 되는데 이른바 태반에서 병을 얻은 것이다. 종자가 섞여 있으면 이르고 늦음이 같지 않게 된다. 종자가 눅눅하면 싹이 나지 않으며 싹이 나더라도 부실하다.) 키질을 해서 쪽정이를 제거한 뒤 물에 담가 뜨는 것을 버리고 [가라앉은 것을] 건져내서 햇볕에 충분히 말려 습기가 없도록 하며 호전 같은 종류의 용기에 담아서 단단히 저장한다. (호전은 향명이 공석이고,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많은 경우 올음하게 된다.) ... 겨울에 향이라나 나무통을 땅속에 묻고 열지 않도록 한다. 선달에 이르러 눈을 거둬서 풍성하게 담고 점천(향명은 비개)으로 두텁게 덮는다. (고서에 이르기를 눈은 오곡의 정기라 했다.) 파종할 때에 이르러 그 속에 종자를 담갔다가 건져내서 햇볕에 말리는데 이렇게 하기를 두 차례 한다. 혹은 나무통에 소·말 외양간 구덩이의 오줌을 담아서 거기에 종자를 담갔다가 건져내 햇볕에 말리는데, 또한 반드시 세 차례 한다.⁶⁶

『농사직설』에서는 곡종 준비를 위한 실행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하면서 『농상집요』에서 제시하는 원론적인 내용들을 부가 설명으로 동원하였다. 예컨대 종자의 선택에 대해 『농사직설』에서 먼저 견실한 것으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

⁶⁵ 『농상집요』 권2, “收九穀種”. “《齊民要術》: 凡五穀種子, 沍鬱則不生, 生者亦尋死. 種雜者, 禾則早晚不均, 春復減而難熟. 《汜勝之書》曰: … 雪汁者, 五穀之精也, 使稼耐旱. 常以冬藏雪汁, 器盛, 埋於地中, 治種如此, 則收常倍 …”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은 최덕경 역주, 앞 책, 85-91 참조.

⁶⁶ 『농사직설』, “備穀種”. “收九穀種, 取堅實不雜不沍者(沍, 鬱沍. 種不實, 則明年穀德亦不實, 所謂受病於胎也. 種雜則早晚不等, 種沍則不生, 雖生亦不實). 簸揚去秕後, 沉水去浮者, 漉出曬乾以十分, 無濕氣爲度, 堅藏蒿簾之類(蒿簾, 鄉名空石. 小有濕氣, 多致鬱沍) … 冬月, 以瓮或槽, 埋地中, 要令不凍. 至臘月, 多收雪汁盛貯, 苫薦(鄉名飛介)厚蓋(古書曰: 雪, 五穀之精). 至種時, 漬種其中, 漉出曬乾, 如此二度. 或用木槽, 盛牛馬廐池尿, 漬種其中, 漉出曬乾, 亦須三度.”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은 이병희 역해, 『농사직설: 풍토가 다른 농법도 다르다』, (이카넷, 2018), 45-47 참조.

고 녹녹하지 않은 것을 취한 다음에 키질과 물을 사용해 다시 체질하고 건조와 저장을 하는 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건실하거나 녹녹한 종자를 심는 결과를 제시하는 『농상집요』의 언급은 그 뒤에 부가 설명으로 붙어 있다. 눈 녹인 물의 사용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농사직설』은 눈 녹인 물의 수집 방법부터 종자를 거기에 담그는 방법까지 정리할뿐더러 사용하는 도구나 담그는 횟수, 가능한 대체물 등 세부적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농상집요』의 설명은 눈 녹인 물의 종자에 대한 이점에 집중되는데 이는 『농사직설』에서 “고서에서 말하기를, 눈은 오곡의 정기다”라는 한 마디로 축약하고 부가 설명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사 실행의 방법이나 작업의 과정을 설명하는 서술 방식은 주로 동사(動詞)를 많이 사용하는 기술지도적 설명이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원리적인 언급은 부속 설명으로 나타나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⁷ 기술지도 중심의 서술은 농법의 기록이라는 최초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농의 경험과 실천의 과정을 문자화한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집권층은 『농사직설』의 편찬을 통해 노농의 경험적 지식을 정리하되 거기에 『농상집요』 등 문헌의 원리적인 지식들을 가미함으로써 조선 풍토에 부합하는 실행적인 농사 지침서를 구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자화라는 지적 활동을 통해 노농 지적 존재에 대한 자신의 지적 우위를 확보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조선 초 집권층이 노농의 지적 역할을 다룬 방식은 조선 후기의 그것과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정조의 명에 의한 응지농서(應旨農書)의 편찬 과정에서 농사 경험에 관한 두 가지 이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향촌 지식인들은 농사 현장을 주도하는 노농들의 지적 권위를 강조하고 보다 분권화된 농업을 추구한 반면 중앙 엘리트들은 노농의 경험을 부정하고 중국 농서에 경험 입증의 준거를 두면서 집권화된 농업 기술 체제를 구축하려 했는데, 이 두 가지 경험은 조선 후기 농서에서 서로 경합, 각축하게 되었다고 한다.⁶⁸ 그런데 조선 초 『농사직설』의 편찬 과정에서는 농사 경험의 권위 소재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실험실과 현장 등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

67 『농사직설』의 제목 및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점후(占候)와 같은 농가의 ‘타설(他說)’을 배제하는 이 농서는 농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농업생산 실천의 기술적 지도를 집중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염정섭, 앞 논문 (2021), 11-17 참조.

68 이에 대해서는 안승택, “18·19세기 농서에 나타난 경험적 지식의 의미 변화와 분화”, 『한국사상사학』 49 (2015), 161-205 참조.

다. 이 시기 세종을 비롯한 중앙 집권층은 물론 수령의 위치에 있던 전강과 같은 지방 집권층도 노농의 지적 권위를 옹호하고 그의 경험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농의 경험적 지식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한 집권층들의 행정적 명령과 사회적 기대에 따라 아래로부터 위로 수용된 것이다. 다만 조선 후기의 향촌 지식인이 노농의 지적 권위를 직접적으로 대변해 준 것과 달리, 『농사직설』의 편찬 과정에서 조선 초 집권층은 조선 지역성 문제의 처리와 유교 국가로서의 문물제도 정비 등 시대 과제 속에서 지식의 획득과 명분의 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농의 역할을 동원했고 본국 풍토에 부합하는 농법을 문자화하여 조선의 농서 전범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지적 권위와 신왕조 지배자로서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려 말 『농상집요』의 간행, 조선 초 『농상집요』의 번역과 『농사직설』의 편찬 과정에서 집권층이 어떻게 농업 지식의 생산 및 보급을 통해 자신의 지적 권위를 수립하고 나아가 자신의 지배 의도를 실현했는지 살펴보았다.

고려 말에 경상도 함주에서 수령 강시가 주도한 개인적 차원의 『농상집요』 간행은 안렴사 김주와의 상의, 진주목사 설장수와 당대 제일의 학자 이색에 대한 서문 작성 요청 등의 움직임에서 농서 간행을 통한 농업 진흥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강시는 고위자, 명망가의 정치적·학문적 권위를 빌려 농서 간행 사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고, 서문에서 설장수는 권농을 비롯한 사회 지배에서 수령으로 대표되는 사대부 관료의 책임, 역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역설하고 이색은 농업 생산 증진을 통한 유교적 사회 질서의 구축 이른바 “제민산, 흥왕도”라는 사대부 관료로서의 사명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들의 서문을 담은 『농상집요』의 간행이라는 이념 선전의 장에서 농서 간행 주체들은 사대부 관료로 대표되는 집권층의 지적·정치적·사회적 권위를 수립하고 이로써 그들의 의식 및 세력 확대를 이루려고 하였다.

조선 건국 후 집권층은 국가 차원에서 농서의 제작과 보급을 추진하였다. 태종대에 『농상집요』를 이두로 번역한 것은 지방의 권농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관 파견과 하급 관리 동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 번역 과정에

서 집권층은 언어적·경험적 측면에서 외래 경험인 중국 농업 지식을 조선에서 활용할 만한 지식으로 토착화·표준화시켰고, 그것을 사회의 농업 생산 실천에 효과적으로 옮기기 위해 행정적 수단으로 운영된 잠실에서 양잠법을 시범적으로 전시함으로써 민의 생산활동을 지도할 만한 자신의 지적 권위와 지배 정당성을 구축하였다. 세종대의 『농사직설』 편찬에서 집권층은 선진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 한전 농법에 치중하던 기존의 중국 농서와 거리를 두는 전략으로 ‘풍토부동’이라는 논리를 활용하였고, 수전 농업 지식의 획득과 조선 풍토 구현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노농의 지적 존재를 동원하였다. 이와 함께 노농의 경험적 지식에 대한 실험적 검증과 문자화 처리를 통해 노농에 대한 자신의 지적 우위를 나타내며, 조선 풍토에 맞는 국가의 전범적 농서를 만듦으로써 지배와 교화의 정당성을 시사하였다.

농서 제작을 통해 본 여말 선조 집권층의 지적 권위 수립 방식은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고려 말에는 지방관 위주의 개별 사대부 관료들은 아직 성장 중인 사대부층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서를 이념 선전의 장으로 보고 사대부의 지적 우위를 표방했다. 조선 초에는 국왕과 조정 관료로 구성된 중앙 집권층은 신왕조 집권체제의 재편과 유교국가의 건설 등 훨씬 더 복잡하고 웅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국가 사업으로 농서를 편찬하고 보급한 과정에서 농업 지식에 관한 국가적 표준을 정리하고 지식의 내용과 의미 내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지적 권위를 수립하고 지배 질서의 구축과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조선 건국 전에 사대부 관료의 세력 확대와 성장으로부터 건국 후에 일원적·집권적 국가 지배 질서 및 그 정당성의 구축까지 집권층 과제의 확장 과정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조선 초의 농서 제작은 국가 농법 전범의 구축 사업이라고 할 만큼 집권층 집단지성의 발휘와 자기 인식과 관련된 시대정신의 구현 노력이 필요했고, 이러한 목적하에 농업 지식의 내용과 체제의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물을 창출하였는데, 바로 이 같은 지적 활동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풍토부동’ 같은 조선 지역성 문제에 대한 사색의 과정에서 집권층 지적 권위 수립의 좀 더 깊은 의미와 효과를 감지할 수 있다. 조선 초 특히 세종대에 제작된 『향약집성방』, 『칠정산』, 『농사직설』 등을 비롯한 과학기술 저술이 후세의 집권층에게 물려준 유산은 어떠한 지식이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본국의 지역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 나갈 것인가의 과제에서 제시된 이념적 좌표 그 자체이다.⁶⁹

이러한 이념적 좌표는 바로 세종대 집권층이 수립한 지적 권위의 가장 성공적인 구현이라 생각된다.

그 이념적 좌표는 당대 집권층이 조선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두고 조선이라는 존재의 구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의약 부문에서 향약 등 토산물 활용을 통해 조선 풍토와의 물적 연계를 구축하거나, 천문역산 부문에서 서울 지방시의 적용을 통해 조선 땅의 시·공간 정합을 도모하거나, 아울러 농업 부문에서 각지 풍토를 대표하는 노농이라는 인간 존재와의 소통 및 상호작용을 통해 실존하는 본국의 땅 그리고 이 땅에 소재하는 조선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 초 집권층의 지적 권위 수립은 단지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지배 정당성을 확인시키는 것 외에 자신의 지배가 작동되는 조선이라는 자립적 공간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투고: 2024년 10월 30일, 심사 완료: 2024년 12월 4일, 게재 확정: 2024년 12월 20일)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Books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llectual Authority by the Governing Group in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ZHENG Zex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tudies on agricultural books produced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ir cultural implication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governing group of this period aimed to preserve social order through establishing intellectual authority in the process of agricultural knowledge production. In late Goryeo, Kang Si, the governor of Hapju, published *Nongsangjiyao* including prefaces written by Seol Jang-su and Yi Saek, which claimed the social roles of Confucian scholar-officials. In this formulation, scholar-officials tried to strengthen their awareness and expand their influence as the governing group.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Nongsangjiyao* was translated into the Idu script to promote local agricultural guidance. The translation, conducted with linguistic and experiential adaptations, localized and standardized Chinese agricultural knowledge. In addition, the governing group displayed agricultural techniques at demonstration sites, asserting their legitimacy in governance and edification. In order to introduce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King Sejong ordered the compilation of *Nongsajikseol*, based on the rhetoric of “environmental diversity” and the intellectual contributions of veteran farmers. By validating their knowledge and documenting it in written form, the governing group positioned themselves as the creator of Joseon’s agricultural manuals. This paper shows a way of understanding the governing group’s agenda and strategies of knowledge production during this period.

Keyword. agricultural books, late Goryeo, early Joseon, intellectual authority, knowledge production, locality, social governance